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신성식*

요 약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시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을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8년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를 우려하여 반대하면서 사법부와 타 기관간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첫째, 단일 형사사법기관에서 서류 작성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문서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가를 절감시킴으로써 사무생산성을 향상, 둘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신속화하고, 문서 접수에서부터 편철 및 보존에 이르는 문서처리절차가 비약적으로 축소되어 업무개선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셋째, 전자문서를 이용하게 되면 정보의 축적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통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장점과 평가를 받고 있다.

Study on th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Shin Sung Shik*

ABSTRACT

KICS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mputer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realize a quick and transparent criminal justice process. Thus, it has been operating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by establishing criminal justice portal for the empowerment of the people. While in 2008 the opposition by the Court concerns the independent function of the judiciary and privacy violations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its own operating system between the judiciary and other institutions. KICS improve office productivity by creating documents in a single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reduce costs, and costs of document exchange between criminal justice agencies. Secondly,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simplified by using the electronic documentation system and speed up, bind and document handling procedures ranging from preserving documents received are reduced dramatically contribute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organization through business improvement. Third, The use of an electronic document stored in the information is easy, and it is possible to easily access a variety of information can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an open state by smoothl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eople. Finally, KICS building a network of criminal legal systems to maximize the benefits and the electronic integration effect it is being evaluated to improve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criminal legal system.

Key words : Criminal Justice, KICS, E-Governm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ystem

접수일(2015년 6월 28일), 수정일(1차: 2015년 6월 30일),
계재확정일(2015년 6월 30일)

* 세경대학교 경찰경호과

1. 서 론

형사사법기관의 통합데이터 시스템에 해당하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라 함) 사업은 2010년 1월 2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였다. KICS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형사사법포털 구축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 e-형사절차의 구현을 지향하기로 설정하고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적 기능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를 우려하여 반대하면서 사법부와 타 기관간의 독자적 시스템 운영과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광의의 형사절차상의 통합적 정보제공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기관들 간에도 유기적인 정보연계와 협력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KICS는 경찰의 수사업무부터 검찰의 공소제기 업무, 법원의 형사재판 관련 업무 및 법무부의 교정국·보호국·출입국관리국 등의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일관성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다[3]. 또한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4개의 형사사법기관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에서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정보와 문서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자적 업무관리 체계이며,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이 독립적으로 각자의 시스템을 운용하되 각 시스템은 공통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KICS 구축은 형사사법 정보관리에 있어 사건기록 송치(경찰, 관세청, 국정원, 국세청 등), 수사(검찰), 공판(법원), 집행(법무부)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기관별로 분산 구축 관리되어 형사사법 기관 간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형사사법 기관 간 통합수사자료 정보망, 통합시스템 및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통합형사사

법 포털 구축, 신원증명서, 출국가능사실 증명 등 각종 형사사법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4].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약식절차에서는 완전한 전자화가 이루어져 기존의 종이문서를 온라인 전자 문서로 대체하고 사건처리 또한 전자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에 모든 국민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과 모바일 앱(APP)에서 24시간 사건 진행 상황조회, 벌과금 조회 및 전자민원신청, 재판서 및 통지서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전국 1,000여개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 및 주요사건에 대한 피해 당사자의 사건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업무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까지 포함한 사항 즉,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의 기본 방향, 형사사법업무 전자화 추진조직 및 체계에 관한 사항, 전자화 대상 문서 등의 선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공동 활용되는 형사사법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에 따르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전자화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정보보호 대책 등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의 전자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있다.¹⁾

이하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통합정보체계 시스템의 시행 및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형사사법기관 단계별 활용실태와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KICS 추진경과

KICS는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공판중심주의의 부적절한 사건관리, 형사사법기관간의 분리된 정보체계로 인한 효율성 저하, 사법수요자인 국민 중심이 아닌 공급자 관점의 형사사법서비스 운영, 약식사건 등의 간단한 사건 처리에 대한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시행되었다[3].

또한 KICS는 2004년 전자정부사업이라는 국정과제 선정 이후 2005년 BPR/ISP 사업을 거쳐 최근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제4항

<표 1> KICS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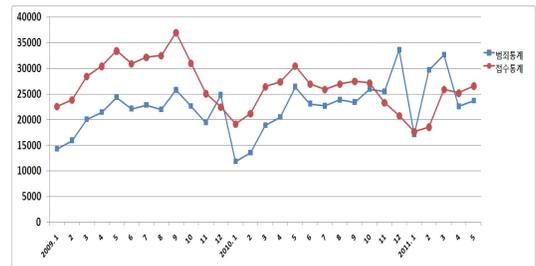
일시	추진 내용
2004.05.	국정과제선정: 전자정부사업
2005.01.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기관합의서 거쳐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추진단 출발
2005.01.-2007.07.	BPR/ISP 사업진행 ²⁾
2005.08.-2007.	제1차-2차 사업진행: 경찰, 검찰, 법원구축으로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부터 진행
2008.-2009.	제3차-4차 사업진행: 독립적 운영하되 중첩부분은 법무부 운영단 신설해 관리함의
2009.12.	관련법률 2건 국회의결
2010.05.	관련법률 시행 및 시범운영
2010.07.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면개통
2012.12.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서비스 실시
2013.06.	모바일서비스 실시
2013.08.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실시

KICS의 구체적인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형사사법기관의 사용자는 개인 ID를 이용해 형사사법시스템에 접속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사건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일부 문서를 작성하는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한다. 그리하여 경찰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 검찰은 검사실 수사정보시스템, 법원은 형사공판시스템, 법무부는 교정통합시스템 등 각 기관별로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여 중복 입력하였으나 KICS로 시스템이 일원화되었다.

이는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과 업무의 신속성 제고는 물론 통계분석까지 용이하게 하였으며, 기관별 시스템이 엄격하고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을 정보와 기록 중 일부를 전자화 한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국민의 편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상시 온라인 형사사법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공하였는바, KICS 개통 전에 11건에 불과한 정보를 총 400건에 해당하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간 정보를 공동 활용하였다.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형사사법 관련 자료의 전자적 제공을 보면, 경찰 4,851,509건, 검찰 4,178,509건, 법원 3,658,757건 등 총 12,688,527건의 정보가 제공되었다.

2) BPR/ISP은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약자로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전체의 업무를 재설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업무시스템 구축 계획을 의미함.

KICS의 시행경과를 살펴보면, 2004년 12월 대검찰청, 법원, 법무부, 경찰청 등 주요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기획단’을 발족하였고, 2005년 7월 형사사법 업무절차 표준화 및 대국민 통합서비스 구축방안을 위한 정보화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사건기록 송치(검찰, 관세청, 국정원, 국세청 등), 수사(검찰), 집행(법무부)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기관별로 분산 구축 관리되어 왔던 것을 형사사법 기관 간 통합수사자료 정보망, 통합시스템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통합형사사법 포털 구축, 신원증명서, 출국가능사실 증명 등 각종 형사사법민원처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



<그림 1> 절도사건의 범죄통계 변화추이

<그림 1>과 같이 KICS사용 전후 절도사건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말 범죄통계선이 접수통계선을 약간 초과하였다가 연초에 다시 원래 경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KICS시행 전이므로 KICS시행과 관계없는 통상적인 연말 집중적인 통계입력현상으로 보인다. 2010년 5월부터 2010년말까지 KICS시행을 계기로 접수통계선과 범죄통계선 간격이 점차 줄어들다가 2010년말 다시 범죄통계선이 초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KICS시행을 계기로 통계입력이 증가하면서 접수통계선과 범죄통계선의 간격이 KICS시행 전과 비교해 점점 눈에 띄게 줄어들어가는 추세에서 연말 집중적인 통계입력현상이 겹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2-3월에는 연말 집중적인 통계입력현상이 끝났는데도 연초에 범죄통계선이 접수통계선을 2개월이나 초과했다가 4-5월에 다시 원래 경향으로 복귀하였다[2].

3. 활용실태

3.1 형사사법포털에 의한 형사사법 정보제공

KICS는 24시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자신의 형사사법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가 있다. 사건단계별 진행정보 140여종, SNS 서비스 146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통지서, 판결문, 불기소결정문, 미납 벌과금 등의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한데 범죄신고, 각종 법률서식 제공, 형사절차 및 관할 안내, 판례 및 법령 검색도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건의 정보를 제공하는바 전국의 1,032개 피해자 지원기관까지 안내해주고 있다. 2011년 기준 형사사법포털 이용 현황은 누적이용자수가 1005만 578명 정도에 이른다. 사건진행 조회 건수는 총 147만 9983건으로 이중 검찰 사건이 85만 3619건(65.8%), 경찰 사건 44만 783건(24.8%), 법원 사건 18만 5656건(9.4%)에 이른다. 벌과금 납부 증명서 발급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 건수는 2010년 7월 358건에서 2011년 6월 3046건으로 약 9배 증가했다.

3.2 음주 및 무면허 약식사건의 완전 전자화

KICS는 음주 및 무면허 약식사건에 대해서는 완전 전자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 최초 입건 및 수사단계에서 경찰관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수치를 입력하여 경찰서 전송하여 피의자는 전자약식 절차에 의한 수사 및 재판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만약 전자약식절차에 동의하면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경찰의 입력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사를 마친 피의자는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싸인 패드로 전자문서에 서명한 후 의견서나 기록목록 등도 전자문서로 추가 작성하여 검찰에 전자 송치하게 된다.

검찰의 추가 조사 및 기소와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여 경찰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전자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청구한다.

법원의 약식명령은 기록을 검토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전자약식명령문을 작성하는데 형사사법포털에 약

식명령문을 등록하여 당사자가 확인 가능토록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통지를 받고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하면 송달로 처리되는 것이다.

검찰 및 법무부의 형집행에서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벌금 액수와 납부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자형태로 형집행 지휘서를 작성하여 형을 집행하게 된다.

결국 통상 조사, 기소, 판결 송달 등 절차에 소요되던 120일을 약 15일로 대폭 단축시키는 결과를 내었으며, 실제로는 47일 걸리는 사건을 평균 31일에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종이문서 비용, 우편송달 비용 감소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한편,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건의 전자약식 처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자약식 처리사례

기준 시점	경찰 입건	검찰 기소	법원 약식명령
2011.7.12. (개통 1년)	59,020	54,313	49,210
2012.7.13. (개통 2년)	138,081	129,583	127,083
음주무면허 사건 중 전자약식 비율 : 2010.7(개통시) 2% ⇨ 2012.7 25.5%			

3.3 KICS 이용 현황

국민의 KICS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7월 이후 2012년 10월 기준 누적이용자는 총 30,749,217건이 접속되었다. 이 중에서 사건진행 상황 조회는 5,754,325건, 벌과금 조회 2,195,859건, 음주무면허 전자약식처리 167,707건이 이용되었다. 또한 각종 민원신청은 32,114건 이용되었으며, 온라인 증명서 발급 26,564건, 공동 활용이 14,570,397건 이용되었다.

<표 3> 국민의 KICS 이용 현황

구 분	누 계 (2010.7.12.-2012.10.31.)		
형사사법포털 접속현황	총 합계 30,749,217		
형사사법포털 사건진행 상황조회	경찰	사건진행 상황조회	1,799,900
	검찰		3,243,680
	법원	합계 5,754,325	710,745

형사사법포탈 벌과금 조회		2,195,859	
음주무면허 운전 전자약식 처리		167,707	
민원신청	벌과금납부증명	합계 32,114	3,741
	불기소이유고지청구		15,963
	사건처분결과증명		4,417
	진정서/탄원서 제출		3,873
	재판서 온라인열람신청/ 등(초)본 교부 예약신청		1,154
	기타		3,066
온라인 증명서 발급		26,56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공동 활용		14,570,397	

3.4 사례 검토

사례 1 : 2012년 10월 대법원은 CIMS나 KICS에 무혐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2009년 7월, B씨는 2008년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결정되었지만 CIMS에는 사건번호와 수사단서, 접수 죄명, 종결일자,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입력됐고 이 정보들은 2010년 5월 KICS로 이관하였다. 이에 A씨는 경찰청에 CIMS와 KICS에 포함된 자신들의 사건관련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경찰관들이 개인정보를 CIMS와 KICS를 통해 수집하거나 보관한 행위와 개인정보 수집 보관 내역을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모두 삭제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각각 1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삭제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례 2 :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13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B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찰은 동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준비했고 이를 위해 재판부에 판결문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아직 판결문 작성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선고일로부터 1주일(상고 만료일)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내지 않았다. 심

지어 KICS에도 판결문을 등재하지 않아 검찰은 왜 일부 무죄가 내려졌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재판부가 구두로 설명한 판결요지 및 주문만 듣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조에 의거 10일 이내에 송부하면 되므로 법적 문제없다고 반박하였다.

사례 3: 미국의 경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근거규정은 연방형사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국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가 형사소송절차 전자화의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모범답안으로 Model Local District Court Rules for Electronic Case Filing을 제정하여 승인하여 시행하고 있다[6]. 또한 영국은 국가형사사법위원회(National Criminal Justice Board)에서 내무장관, 사법부행정원장, 법무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관급 인사 및 총수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부처 간 원활한 의견 조율과 중립적인 중재 및 형사사법정보체계의 장기적인 비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42개의 지역형사사법위원회(Local Criminal Justice Board)를 산하에 운영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 관할 지역에 해당하는 형사사법 관련 사안을 심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7].

4. KICS시행 전후 정보의 단계별 활용

4.1 경찰단계

경찰단계에서의 KICS는 정보화시대 경찰수사의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먼저, 경찰 등록 인원 9만명 이상 1일 약 3만명의 경찰관이 접속하여 사용했으며, 지구대 단계에서부터 모든 사건은 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전과정을 KICS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전의 CIMS(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경우 지구대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통계입력이 안 되었다. 또한 경찰수사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KICS에 접속하여 각종 서식 활용, 필요한 데이터 조회, 수사서류 온라인 결재, 음주무면허 등 약식대상 사건은 전자약식 처리, 온라인으로 사건진행 확인하는 등 경찰이 제공하는 의견서, 송치서, 범죄경력 조회 등이 활용되고 있다.

4.2 검찰단계

검찰단계에서 KICS는 형사사건 기록보존(사건번호, 인적사항, 종국결과 등)은 물론 사건관리시스템, 재판형집행시스템, 통신자료 제공 시스템 등 내부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기소 전까지 경찰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비교적 충실하게 제공하여 검찰이 제공하는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각종 영장청구서, 형 집행 지휘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또한 내부 업무처리에 KICS 시스템 활용과 형사절차의 투명성 제고로 인해 기관별·직원별 엄격한 권한 관리 및 로그기록 등을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켰다.

4.3 법원단계

법원단계에서 KICS는 법원이 제공하는 각종 영장 발부 및 기각 정보, 공판기일 정보, 판결문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의 KICS 정보를 재판 과정에서 활용, 기록보존 등 업무도 처리한다.

4.4 법무부 교정단계

법무부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연계하여 형 집행 업무에서도 KICS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용정보,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재판결과와 영장 및 집행지휘 내역을 수신 처리하는 자유형 집행시스템 구축, 수용관리 및 출정업무를 처리하는 수용관리시스템 구축, 보호관찰 명령집행 및 집행상황 관리에 필요 기능 지원하는 보호관찰시스템 구축하였다. 또한 가석방 및 가퇴원 심사, 보호관찰의 해제·정지·취소 등 심사시스템 구축, 위탁·보호소년의 입출 관리와 신상관리, 교무업무 등 소년보호정보시스템 구축, 감호자 관리를 위해 입소와 출소 관리, 분류심사, 치료 등 감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본권들이 법률로써 제한될 수는 있다. 물론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는 침해할 수는 없지만, KICS의 도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형사사법시스템이 개선되었다.

먼저, 단일 형사사법기관에서 서류 작성하여 형사사법기관 간 문서교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원가를 절감 시킴으로써 사무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또한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화·신속화하고, 문서 접수에서부터 편철 및 보존에 이르는 문서처리절차가 비약적으로 축소되어 업무개선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문서를 이용하게 되면 정보의 축적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열린 정부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통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상존하게 된다[5].

마지막으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는 음주 및 무면허 전자약식 처리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개통 전후 형사사법기관에서 이용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의 이용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흐름에 신속히 반응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 및 전체 체계의 계획과 예측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가 있다.

참고문헌

- [1] 김혜경,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보호관찰, 제11권 제2호, 179-215, 2011.
- [2] 나영민,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시행 1년과 범죄통계의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18호, 1-5, 2011.
- [3] 백승민, “한국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관리를 위한 조직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261-282, 2007.
- [4] 최창학, “한국의 전자정부 정책의 현재와 미래”, 정보과학회지, 제22권 제11호, 5-12, 2004.
- [5]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전자문서 도입의 단계별 발전모형 및 형사소송법체계 정비방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제도 세미나, 2006. 11. 23.

[6] New Releas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 March 16, 2004.

[7] 영국국가형사사법위원회(www.lcjb.cjsonline.gov.uk)

[저 자 소 개]



신 성 식 (Sung-shik Shin)

2001년 2월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2013년 8월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석사

2016년 8월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2010년 10월~현재 세경대학교 경찰경호과 교수

email : sungshik@saekyung.ac.kr